

## “만화 사용계약 자동연장 조항은 원칙적 유효”

**Q** 만화를 디지털 파일화하여 서비스하는 업체가 만화작가 또는 만화에 관한 저작권자와 체결한 만화 사용계약 기간의 자동연장 조항은 유효한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동연장조항은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약정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반 사항을 고려한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체결한 약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만화작가의 공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대가에 비하여 너무나 형평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동일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개별 만화작가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계약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되므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산정과 지급기준을 업계의 통상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Q** 만화콘텐츠 사업을 할 때 콘텐츠 보호를 위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만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는 등 저작권에 기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을 등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침해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을 등록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 판결 사례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허락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법원이 참작한 사항 [1996. 7. 30. ~ 손해배상(기)]

저작권에 관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은 일임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저작권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나아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12. 9. 선고 ~ 판결 참조)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월간 「디지털콘텐츠」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 캠페인 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DC기업이 만화 저작권자와 계약한 이후 계약서 항목 중 계약기간 자동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와 디지털 만화콘텐츠 저작권 보호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